



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2년 11월 13일

CUOMO 주지사, 유틸리티 회사의 폭풍 대비 및 관리를 조사, 연구하고 비상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의 규제를 조정하기 위한 개혁을 권고할 **MORELAND** 위원회 발족

위원회는 큰 천재지변에 대한 회사의 대비를 조사하고 향후의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권고할 것임

Andrew M. Cuomo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허리케인 Sandy 및 Irene과 열대성 폭우 Lee를 포함한 큰 폭풍들이 뉴욕주를 강타하였기 때문에 주의 전력 유틸리티 회사들의 대응, 대비 및 관리를 조사할 위원회를 Moreland법에 의거 발족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하였습니다.

이 위원회는 이러한 비상 전후에 전력회사들이 취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검토하고 뉴욕주의 전력 공급 서비스의 감독, 규제 및 관리를 개혁 및 현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권고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.

“허리케인 Irene과 열대성 폭우 Lee로부터 허리케인 Sandy에 이르기까지 지난 2년에 걸쳐 뉴욕주는 우리 주 역사상 최악의 자연 재해들을 겪었습니다”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우리는 더욱 빈번하고 큰 날씨 사건의 현실에 적응함에 따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연구하고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.”

이 위원회의 책무에는 NYPA, LIPA, NYSERDA 및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중첩되는 책임과 임무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 허리케인 Sandy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규제 기관, 주 기관 및 당국 그리고 준정부 단체들의 기존 미로가 유틸리티 시스템의 역기능에 기여하였습니다.

이 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하고 선서하에서 심문할 권능을 가질 것입니다. 위원회의 위원들:

공동의장 **Robert Abrams**, 전 뉴욕주 검찰총장

공동의장 **Benjamin Lawsky**, 금융서비스부 부장

Peter Bradford, 전 공공서비스위원회 의장

Tony Collins, 클락슨대학교 총장

John Dyson, 전 뉴욕전력청 청장

Korean

Rev. Floyd Flake, Greater Allen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athedral의 담임목사

Mark Green, 전 뉴욕시 공익 옹호자

Joanie Mahoney, Onondaga 카운티 집행관

Kathleen Rice, Nassau 카운티 지방검사

Dan Tishman, AECOM Technology Corporation의 부회장, Tishman Construction Corporation의 회장 겸 CEO

다음은 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 명령입니다:

행정 명령

행정법 제6조에 의거한 지명

2012년 10월 29일부터 허리케인 Sandy가 Long Island, New York City, Westchester, Rockland 및 주변 카운티들에 대규모 정전을 야기하여 Long Island에 있는 고객의 90%를 포함하여 200만 이상의 고객에게 영향을 끼쳤다.

또한 폭풍 비상은 수 천개의 업소와 병원, 양로원, 요양원 및 기타 장애인 및 다른 특별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시설을 포함하여 뉴욕커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립 및 공립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영향을 끼쳤다.

폭풍 비상으로 지역 전체의 대량 교통, 교량, 터널, 도로 및 여러 수로를 포함한 주요 대중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었다.

정전은 통신 서비스, 가솔린 터미널 및 주유소, 주거지 천연가스 전달 및 대규모 주거지 및 상업 지구 스템 전달을 포함하여 다른 다양한 중요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.

2012년 11월 7일에는 눈을 동반한 해안성 폭풍 노리스터가 허리케인 Sandy의 영향을 입은 일부 지역의 교통, 재산 피해 및 정전을 더욱 악화시켰다.

많은 커뮤니티, 동네 및 공업 지역의 정전 지속과 그로 인한 다른 중요 시스템의 피해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라인의 붕괴 지속은 뉴욕커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였고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였다.

2011년 8월 및 9월에는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우 Lee의 결과로 뉴욕주에서 100만 이상의 고객들이 전기를 잃었으며 일부 커뮤니티들은 장기 정전으로 Long Island, New York City, Westchester, Rockland 및 주변 카운티들뿐만 아니라 Albany, Broome, Chenango, Chemung, Clinton, Columbia, Delaware, Dutchess, Essex, Franklin, Fulton, Greene, Hamilton, Herkimer, Montgomery, Oneida, Otsego, Rensselaer, Saratoga, Schenectady, Schoharie, Tioga, Tompkins, Warren 및 Washington 카운티들도 영향을 받았다.

Korean

2008년 12월에는 착빙성 폭풍이 뉴욕주에 300,000건 이상의 정전을 야기하였는데, 많은 고객들은 그 폭풍 후에도 1주일 동안 전기가 없었다.

이러한 최근 및 과거의 사건은 유틸리티 비상 대응 계획 및 절차가 미래의 비상을 예기하고 대비해야 함을 표시한다.

유틸리티 회사들은 대중에게 안전하고, 적절하고,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.

뉴욕주 공공서비스 위원회가 뉴욕주의 민간 유틸리티 회사들의 감독 임무를 맡은 규제 기관이지만 권한, 관할 지역 및 책임이 중첩되는 뉴욕전력청, Long Island 전력청 및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을 포함한 다른 규제 기관, 주 기관 및 당국 그리고 준정부 단체들의 기존 미로가 유틸리티 시스템의 역기능에 기여하였다.

뉴욕주 유틸리티 회사들에 의한 자연 재해에 대한, 그리고 특히 그러한 재난의 빈도 및 강도 증가를 고려한, 효과적인 대비 및 대응을 확보하기 위한 유틸리티 관리, 구조, 자원, 현재 규제 틀 및 감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 법률에 의거한 뉴욕주 전력 산업의 면허, 인증, 감독 및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.

유틸리티 회사들의 필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에 대한 전력 제공의 각 및 모든 요소를 연구, 시험, 조사 및 검토하는 것은 분명히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.

뉴욕주 헌법 제IV조, 제3항은 주지사에게 법률들이 충실히 집행되는지 살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

이제, 그러므로 본인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의 사항을 명령한다:

1. 행정법 제6조에 의거, 본인은 다음 사항을 수행할 위원회를 선임한다: (A) (i) 비상 날씨 사건 중 및 후 유틸리티 회사들의 수행을 포함한 비상 날씨 사건 중 및 후 유틸리티 회사들의 비상 대비 및 대응; (ii) 유틸리티 회사들의 비상 대비 및 대응 관련 현재 법규, 규제, 관행 및 절차의 적절성; (iii) 기존 감독 및 집행 메커니즘의 적절성; (iv) 비상 대비 및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틸리티 회사들의 구조, 조직, 소유권, 재정, 통제, 관리 및 관행; (v) 공공서비스 위원회뿐만 아니라 뉴욕전력청, Long Island 전력청 및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의 관할 지역, 책임 및 임무를 포함하여 기존 법규 틀에 의거한 뉴욕주에 대한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을 연구, 시험, 조사 및 검토; (B) 비상 대비 및 대응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대응적인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공익을 가장 잘 보호하고 부합하기 위해 법률, 정책 및 규제 변경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대로 유틸리티 회사들의 구조, 관리 및 관행의 개혁을 위한 보고서 및 권고안 제출; (C) 앞서 명시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문제 또는 황동을 검토.

2. 본 위원회에는 다음의 권한이 주어진다: 증인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할 권한; 선서 또는 확인을 시행하며 선서 하에서 증인을 조사할 권한; 조사, 검사 또는 검토에 관련된 것으로 또는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장부, 기록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; 그리고 직무의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 기능을 수행할 권한. 이에 본인은 행정법 제6조의 권한에 의거 이 위원회에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인이 선임한 자들에게 주어지거나 부여될 수 있는 모든 권능과 권한을 주고 부여한다. 이 위원회는 다른 단체 또는 정부 기관과의 협조로 그와 같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.
3. 위원회는 작업 종결시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공해야 하며 중간, 예비 및 정기 보고서 및 권고안을 발행할 수 있다.
4. 본 행정 명령에서 “유틸리티 회사”란 전기, 가스 및 스팀의 제공에 참여하는 주체를 가리킨다.
5. 뉴욕주의 모든 부, 기관, 사무소, 과, 위원회, 국, 협의회, 청 및 공익 기업은 이 위원회와 협력해야 하고 위원회가 직무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.

2012년 11월 13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